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1. 투자신탁명: DB고배당청년형소득공제증권투자신탁 [주식] (펀드코드: DS392)

2. 변경 시행일 : 2024.04.12(금)

3. 변경 내용 요약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수익률 변동성 기준 변경)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2023.2.20 및 2024.3.1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2024.01.01)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4. 변경대비표

항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표지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며 ,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며 ,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요약정보			
표지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생략)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생략)
투자비용	업데이트	-	결산일자 업데이트
투자실적	업데이트	-	결산일자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	결산일자 업데이트
투자자 유의사항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요투자위험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원금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원금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4.01.01)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0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6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연 240만원 한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단, 3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해지시 납입금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0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6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연 240만원 한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단, 3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해지시 납입금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주식 추가	-	주2) 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지칭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추가	-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수익률 변동성 기준 변경)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2023.2.20 및 2024.3.1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2024.01.01)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	결산일자 업데이트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투자지구 [DB진주찾기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1)투자대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2023.2.20 시행)	⑥파생상품 - 단서 추가 ⑧ 증권대여 - 주식 추가	⑥ 파생상품 - 단서 추가 (헷지목적 또는 헷지외의 목적으로 투자함) ⑧ 증권대여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

		⑨ 증권차입 - 주석 추가	⑨ 증권차입 <u>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해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u>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DB진주찾기고배당 증권모투자신탁 [주식]] (2) 투자제한	오기 정정	동일종목 투자 나. (생략) <u>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u> 의 규정에 따른 금융 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동일종목 투자 나. (생략) <u>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u> 의 규정에 따른 금융 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생략)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u>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u>	(생략)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u>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u>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위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2023.2.20 시행)	위험 추가	<u>증권대차거래 위험</u> <u>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u>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수익률 변동성 기준 변경)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설정 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u>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u>)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중위험자산”은 <u>채권(BBB 등급), CP(A3 등급)</u> 및 이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설정 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u>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u>)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중위험자산”은 <u>채권(BBB-등급 이상), CP(A3 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u> 및 이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u>법 제 4 조제 7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사채</u> , 현금성 자산 및 이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p>4. 설정이후 3 년이 경과한 집합 투자기구는 해당 결산일 이전 3 년간 <u>집합투자기구의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기준으로</u>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 단, 수익률의 <u>표준편차</u>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한 특수집합 투자기구(ELF, 레버리지펀드, 인버스펀드, 부동산펀드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u>(붙임1)표준편차 기준표</u></p> <p>-</p>	<p>4. 설정이후 3 년이 경과한 집합 투자기구는 해당 결산일 이전 3 년간 <u>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토대로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에 따라</u>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 단, 수익률의 <u>VaR</u>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한 특수 집합투자기구(ELF, 레버리지펀드, 인버스펀드, 부동산펀드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u>(붙임2)시장위험 등급 기준표 (97.5% VaR 모형* 사용)</u></p> <p><u>상기 투자위험등급 기준은 DB자산운용(주)의 자체적인 기준으로서 투자자가 판단하는 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표준투자권유준칙 'II.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류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u></p>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2024.3.1 시행)	〈신설〉	<u>(붙임3)(표)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u>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및 주식 추가	- - 주식 추가	- 결산일자 업데이트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관한 사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4.01.01)	<p>〈가입기간〉 <u>2023년 12월 31일</u> ※ 투자신탁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입신청 이후 익일 매수하므로 실제로 <u>2023년 12월 28일(목)</u>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까지 신규신청(자금납입)한 경우를 말합니다.</p> <p>〈세제혜택〉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연 240만원 한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단, 가입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한 경우(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를 인출하거나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p>	<p>〈가입기간〉 <u>2024년 12월 31일</u> ※ 투자신탁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입신청 이후 익일 매수하므로 실제로 <u>2024년 12월 30일(월)</u>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까지 신규신청(자금납입)한 경우를 말합니다.</p> <p>〈세제혜택〉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연 240만원 한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단, 가입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한 경우(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를 인출하거나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p>

		<p>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과세기간 부터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p> <p>1.~3.(생략) 4.(신설)</p> <p>〈감면세액 추정〉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정. 단, 다음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추정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 받은 세액이 추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정 (신설)</p> <p>1.(생략) 2.(생략)</p>	<p>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과세기간 부터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u>다만, 전환가입을 하기 위하여 해지한 경우 해지 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u></p> <p>1.~3.(중전과 동일) 4. <u>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이하 “전환가입”이라 한다)한 경우. 이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그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된 금액 중 전환가입에 따라 중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이체된 금액으로 한정한다.</u></p> <p>〈감면세액 추정〉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정. 단, 다음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추정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 받은 세액이 추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정 1. <u>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전환가입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u> 2.(중전의 1과 동일) 3.(중전의 2와 동일)</p>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업데이트	-	결산일자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	결산일자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	결산일자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	업데이트	-	최근일자 업데이트

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3. 기타 집합투자기 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3)의무와 책임 - 의 무	신탁계약서와의 내용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u>1. 투자설명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u> <u>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u> <u>3.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u> <u>4.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u> <u>5.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u>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u> <u>2.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u> <u>3.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u> <u>4.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u> <u>5.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u> <u>6.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u> <u>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3. 기타 집합투자기 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	최근일자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4)반대매수청구권	오기 정정	①법 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u>제 193 조제 2 항</u> 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①법 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u>법 제 193 조제 2 항</u> 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5)투자신탁의 합병	오기 정정	③다만, '②'에도 불구하고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u>제 223 조제 3 호 또는 제 4 호</u>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	③다만, '②'에도 불구하고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u>법 시행령 제 223 조제 3 호 또는 제 4 호</u>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p>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1.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 223 조 제 3 호 또는 제 4 호에 해당할 것</p> <p>2. ~3. (생략)</p>	<p>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1.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법 시행령 제 223 조 제 3 호 또는 제 4 호에 해당할 것</p> <p>2. ~3. (중전과 동일)</p>
--	--	--	---

(붙임1)표준편차 기준표

등급	1등급 (매우 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 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 낮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15%초과 25%이하	10%초과 15%이하	5%초과 10%이하	0.5%초과 5%이하	0.5%이하

(붙임2)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등급	1등급 (매우 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 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 낮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붙임3)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